

한의학대학(원)교육과정위원회운영내규

제1조(목적) 대구한의대학교 학칙 제25조에 따라 한의학대학(원)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과정의 개선 및 교육과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규정은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율적, 독립적으로 심의 의결한다.

1. 교육목적과 교육목표 및 성과(졸업성과, 시기성과, 과정성과 등)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교육목표의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의 개편, 개발, 운영,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교양, 전공)의 학점 및 강의시수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 운영지침 및 교수법의 개선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에 관한 사항
7. 성적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8. 대학원 과정의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학장, 부학장, 한의학과장, 한의예과장, 대학원학과장, 교육실장, 한의학대학 학생회장, 한의예과 및 한의학과 학생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과 1인의 간사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장이 맡으며, 부위원장은 부학장이 맡는다.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추가 교수위원은 전임교수 중 위원장의 추천으로 한의학대학 교수회의에서 결정하여 위촉한다. 또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추가 학생위원도 학생대표회의의 추천을 통하여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임기간으로 한다. 단 임기 이전의 위원 교체는 위원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④ 간사는 한의학과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해당 소위원회의 이름, 목적, 기능, 기한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과 학장의 승인이 있어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 교육과정평가소위원회, 교육성과개발소위원회, 기초교육과정 개선 소위원, 임상교육과정 개선 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6인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며, 그 중 1인을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으로 위촉한다.

④ 소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 1인을 간사로 정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는 그 목적을 상실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7조(자문위원회) 위원회는 수시로 교수,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과정 개편 시 반영하여야 하며, 창조적 인재교육 및 교육의 질적 향상과 졸업생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외부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의과대학 보직자회의에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당시 교과과정개선위원회는 본 내규에 의하여 ‘교육과정위원회’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개정시행) 이 규정은 2022년 5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조(재개정시행) 이 규정은 2023년 9월 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